



# 두엄누리회보 제 53 호

2007년12월1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http://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 대북비료 지원 시 반드시 가축분퇴비가 포함 되어야 한다.

### 남쪽에는 가축분비료가 넘쳐나고

### 북쪽에는 토양 유기물 부족으로 화학비료가 유실되고

올 년 초부터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지만 대북비료 지원 시 가축분 비료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남한의 축분처리와 환경보존 문제가 있다. 북측에는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의 부족으로 비료성분의 유실이라는 문제가 있다. 화학비료는 특성상 단기간 작물이 일정량을 흡수하면 유기물이 부족하여 보비력이 없는 토양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그대로 유실되고 만다. 결국 화학비료만으로는 식량증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남한은 세계적인 추이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화학비료의 정부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대신할 유기질비료도 한 해 500억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 남쪽은 후대에 물려줄 토양보존을 위해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 북쪽은 10년째 화학비료로만 지원

나 대북 비료지원은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이 전량 화학비료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남측의 농민들은 후대에 물려줄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영농비와 노력을 들이며 고생하고 있는 반면 대북 비료지원은 우선 편리함을 주장하는 북측의 행정 당국자에

이끌려 화학비료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남측 농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북측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넘쳐나는 가축분뇨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물론 축산농가의 고충마저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 통일 후 한반도 농업을 생각하는 남북 협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올 해 초부터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대북비료지원 시 가축분비료의 병행지원을 통일부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

### 북측에서도 가축분 비료 지원 요구하였다

### 한명숙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



측에 병행지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부 의사를 밝혀 병행 지원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올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 담당관이 남측 통일부 김 난영 사무관에게 유기질 비료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올 5월 우리 측에서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측당사자에게 직접 들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10월 말경 모 일간지 출입기자가 사실을 확인하자 통일부 담당과장도 북측의 제안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 11월1일에는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의원이 대북비료지원이 전량 화학비료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학비료와 유기질(퇴비)비료를 혼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이 유기질비료의 지원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묻는 질의를 하였다.

우리협회는 - 가축분 비료지원에 대하여 더욱 큰 성의로 북한을 설득하여 줄 것 - 유기질비료는 최소 연 10만 톤 이상이 지원되어야 할 것. - 대북비료지원에서 화학비료와 가축분 비료의 계정을 분리하여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의 연대서명을 받아 통일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김 상원회장, 낙안유기질 김선일 사장과 함께 통일부를 방문하여 인도협력기획팀 김 남중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김 남중 인도협력기획 팀장은 통일부의 입장은 가축분 비료의 병행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2007년도에도 1000톤 포함의사를 북에 통보하였으나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 전량 화학비료지원을 요청해와 지원이 무산되었다고 설명하고 북측에서 지원 요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지원까지 포함한 이야기 일수 있다며 몇몇 단체에서 가축분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모든 일을 투명하게 논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남한의 축산 농가를 생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을 설득하여 가축분 비료가 병행지원 되도록 힘써 줄 것을 약속 받았다.

## 재활용 가능한 목분과 불가능한 목분

지난 4월 8일 MDF툽밥이 나 가구공장에서 발생하는 목분의 사용에 대해 문제점이 방송 보도된 후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접착제 등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유해성이 문제 되었지만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 12호로 폐목재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료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폐목재  
툽밥이나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 등의 폐 목분을  
제외한 목분은  
사용가능**

관리법에서는 이 목분에 대해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4월 20일 비료공정규격위원회에서 공정규격 별표1의 퇴비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 불가능한 물질 중 1.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 란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 등의 폐 목분 제외”라는 규정을 추가시킴으로 퇴비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목분

은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목분 종류에 상관없이 목분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단속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원료를 별도 규제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원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둘째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한 제품이 공정규격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한쪽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외형상으로 목분으로 보이면 모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물질이 묻지 않은 목분은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

다. 비료관리법에서 사용을 금지시킨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에 두었으니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에서 판정하는 재활용 가능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지어질수 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사용물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부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률을 66%까지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우리 비료 분야에도 부족한 톱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상당량의 톱밥이 수입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톱밥의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는 물질을 무턱대고 규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 이라고 생각 된다. 실제 문제가 된 일부 지역에서 발생 처를 확인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목분임이 판정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물질이 첨가된 MDF톱밥이나 목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구입 시 수집운반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발생처를 확인하여 그 지역의 행정부서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007년 제 3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6일 협회 사무실에서 2007년도 제3차 이사회가 경상북도 지회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소 : 협회 사무실  
일시 : 2007. 12. 6  
안건 :

- I. 임원선거의 건
- II. 가축분비료대북 지원에 관한 건
- III. 협회 관리비 징수의 건
- IV. 기타

협회 정관 제24조(임원의 임기)에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임기(1회 연임 가) 감사는 2년 임기(1회 연임 가)로

명기 되어있다.



지난 12월6일 협회 사무실에서 2007년도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정관에 따라 올해로 제 2기 회장과 이사의 임기와 제3기 감사의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새롭게 선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는 그대로 하되 연임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 되어 내년 총회에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선출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현 이사(8명), 감사(3명)11명 전원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하고 총회 전 선거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 등록업무 부터 투표까지 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맡기로

하였다. 대북비료지원에 관한 건은 그간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가축분비료의 지원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을 논의 하였다. 비용문제는 광고 선전비 남은 부분과 예비비 중 일부를 충당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협회 관리비(수수료) 징수에 관한 건은 올해와 같이 포대 당 일정금액을 징수

## 타 기관에서 옮겨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수료 면제

## 추후 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금액 대폭조정 예정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타 기관에서 옮겨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기로 하였고 추후 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금액을 대폭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년 말 농림부 장관 표창 추천대상자를 전남, 경북, 강원도에 이어 전북 소 병윤 지회장님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 4/4분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은 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잔류항생물질 검사와 비해시험 검사를 마친 업체는 소정의 목록공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농촌진

홍청 농업자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협회에서 단체로 실시한 비해시험검사 성적서는 비해시험검사가 끝나는 12월 중순경에 모두 발급될 예정이다.

### 지자체 자금으로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정부 지원금 주지 말아야 한다.

2008년부터는 퇴비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되면서 그동안 원칙 없이 지원되던 지방비 보조가 정부 지원금과 함께 최고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물이용 부담금 등 지자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비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지원 사업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 업체선정과 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 키거나 몇몇 업체만을 선정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므로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일방적인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 업체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찰까지 붙여 가며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질 좋은 비료를 저렴한 금액에 공급하기 위한 보조사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가 경쟁은 한번이야 당하겠지만 결국 저질 불량 비료를 유통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이 입게 될 것이 뻔하다. 또 몇몇 업체만 선정하여 몰아주기 식 주문을 한다면 이는 한술 더 떠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검은 거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비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는 지방비로만 사업을 하게하고 정부지원금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업체들도 그런 지역에는 무리한 경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